



보도시점

2024. 5. 12.(일) 11:00

5. 13.(월) 조간

배포

2024. 5. 10.(금) 16:00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행정예고

-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 4개 품목(한우·육우·한우 송아지·낙두) 지원 기준 충족
- 이의신청 절차(5.13.~6.3.) 등 거쳐 대상품목 고시 및 직불금 지급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고시안(수입기여도 포함)에 대하여 22일간(5월 13일 ~ 6월 3일)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인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품목별 총수입량,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국내가격의 세 가지 요건이 동시 충족될 경우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되며, 매년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은 해당품목 수입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 이전부터 재배 또는 사육한 농업인등에 대하여 기준가격대비 당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에서 수입기여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증가가 가격하락에 미친 정도) 등을 감안하여 지급하게 된다.

2024년도는 총 106개 품목(모니터링 품목 42개, 농업인등의 신청품목 64개)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고, 한우·육우·한우송아지·낙두 4개 품목이 지원대상 품목 선정요건에 충족되었다. 각 품목의 수입기여도는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한우 및 육우 29.3%, 한우송아지 37.9%, 낙두 58.7%로 산출되었다.

* 한·중 FTA 여야정 합의(2015.11.30.) 이행을 위해 지원센터 산하에 학계와 전문가로 구성

농식품부는 누리집(mafra.go.kr) 등에 상기 분석 결과와 지원대상 품목, 수입기여도를 게재하고,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농식품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란에서 제시한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농식품부 농업경영정책과(전화 044-201-1719, 이메일 kys17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6월 중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고시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농업인 등의 지급신청 및 지자체의 검증과정을 거쳐 직불금을 농업인등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붙임 1.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행정예고 전문
 2. 2024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3. 피해보전직불 발동요건 조사·분석 결과(KREI)
 4.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실 농업경영정책과	책임자	과 장	홍인기 (044-201-1711)
		담당자	사무관	김윤수 (044-201-1719)



농림축산식품부공고 제2024-205호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고시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고시안 행정예고

1. 고시이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첨부 1과 같이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 한우·육우·한우송아지·낙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결과

단위 : 원/kg, 원/마리, 톤, %

구 분	국내산 평균가격	총수입량	지급기준 총족 FTA 체결국 수입량			FTA 체결국 전체 수입량	수입 기여도	
			EU('11.7.1)	미국('12.3.15)	캐나다('15.1.1)			
한우 소고기	기준값	17,062	451,923	302	241,334	8,265	447,371	29.3
	2023	16,628	472,888	528	245,686	14,023	467,339	
	변화율	-2.5	4.6	74.8	1.8	69.7	4.5	
육우 소고기	기준값	9,502	451,923	302	241,334	8,265	447,371	29.3
	2023	9,369	472,888	528	245,686	14,023	467,339	
	변화율	-1.4	4.6	74.8	1.8	69.7	4.5	
한우 송아지	기준값	3452100	451,923	302	241,334	8,265	447,371	37.9
	2023	3162000	472,888	528	245,686	14,023	467,339	
	변화율	-8.4	4.6	74.8	1.8	69.7	4.5	
-			인도('10.1.1)	페루('11.8.1)	베트남('15.12.20)	-		
낙두	기준값	11,918	9,712	0.249	2,106	-	2,767	58.7
	2023	10,625	14,019	4	9,294	10	9,951	
	변화율	-10.8	44.3	1,506.4	341.3	100	259.6	

* 기준값은 '18~'22년 5개년 중 최고최저치를 뺀 3개년 평균 가격 및 수입량 (단 가격은 평균 가격의 90%, FTA 전체 수입량은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한 값)
 * 출처 : 한국무역통계진흥원(수입량), 축산물품질평가원(한우, 육우 가격), 농협중앙회(한우송아지 가격), 양곡도매시장(낙두 가격)
 * 지급기준 총족 체결국의 괄호안 날짜는 해당국과의 FTA 발효일임

※ 지원대상품목 및 수입기여도에 대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및 ‘2024 수입기여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쳤음

<참고>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선정 요건(법 제7조제1항)

□ 「FTA 농어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만족할 경우 지급

* 가격, 수입량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농식품부령에 위임(법 제7조 제3항)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

○ (체결국 수입량) 체결국으로부터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값

구분		수입피해발동계수
시장점유율	10% 미만	1.15
(협정상대국 수입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	10% ~ 30% 미만	1.10
	30% 이상	1.05

나. 재검토기한 3년 연장(부칙)

※ 3년마다 재검토(2024년 7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

3. 의견 제출

이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3일까지 첨부 2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경영정책과, 전화 044-201-1719, 모사전송 044-868-0650, E-mail: kys17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시행 2024. 6. 00.]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4-00호, 2024. 6. 00., 폐지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경영정책과), 044-201-17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5항에 따라 2024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품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
2. 육우
3. 한우송아지
4. 녹두

제3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4-00호, 2024.00.0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2023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3-43호)을 폐지한다.

□ **모니터링 품목 조사·분석 결과(42개)**

구분	총수입량(톤)		FTA 체결국 수입량(톤)		가격(원/kg)		충족 여부	
	기준	2023년	기준	2023년	기준	2023년		
축산	계란	746	360	132	87	1,112	1,613	
	닭고기	143,201	234,873	14,411	12,866	1,243	2,060	
	돼지고기	517,731	529,386	524,242	487,718	4,263	5,526	
	소고기(한우송아지)	451,923	472,888	447,371	467,339	3,452	3,162	충족
	소고기(육우)	451,923	472,888	447,371	467,339	9,502	9,369	충족
	소고기(한우)	451,923	472,888	447,371	467,339	17,062	16,628	충족
	오리고기	83	146	28	-	7,358	12,500	
	우유	1,356,778	1,441,202	1,189,807	1,053,314	978	1,181	
꿀	1,206	1,571	510	862	8,750	11,111		
식량	감자	48,992	70,741	44,426	41,540	1,203	1,765	
	고구마	118	25	44	10	2,033	2,025	
	녹두	9,712	14,019	2,767	9,951	11,918	10,625	충족
	대두	295,167	294,325	73,924	70,798	4,457	4,759	
	보리	208,638	270,730	53,470	51,005	1,131	1,553	
	밀	2,595,446	2,436,908	2,723,702	2,433,516	878	975	
	수수	4,642	2,740	4,071	1,987	4,849	5,043	
	옥수수	2,362,874	2,068,713	519,482	124,765	1,843	1,364	
	울무	121	134	-	-	8,403	9,573	
원예 특작	조	12,708	9,206	11,539	7,095	6,665	8,281	
	팥	40,858	40,976	20,372	22,080	7,861	9,421	
	감귤노지	58,732	46,308	57,979	44,232	1,526	2,273	
	감귤시설	10,535	16,831	8,407	15,317	4,229	5,600	
	당근	115,279	127,981	9,563	11,540	1,231	2,016	
	딸기	10,283	15,025	4,042	4,897	6,958	10,032	
	만감류	104,476	70,927	103,762	70,360	4,314	5,126	
	멜론	1,893	3,150	2,174	3,150	2,701	3,790	
	상추	5,013	5,043	715	877	2,845	3,966	
	선인장	56	38	19	7	1,151	1,887	
	양파	86,885	159,897	4,586	4,337	712	1,109	
	오이	10,550	9,256	2,526	2,361	1,547	2,320	
	참깨	79,575	71,933	26,307	23,784	19,080	23,844	
	체리	15,842	18,357	16,473	18,357	9,920	12,457	
	카네이션	1,045	2,050	778	1,551	4,340	5,370	
	키위	36,696	37,192	38,516	37,192	3,938	5,532	
	포도노지	34,371	21,193	37,563	21,146	5,002	6,190	
포도시설	33,776	30,922	35,691	30,413	7,697	11,354		
임업	수삼	16	15	-	-	41,400	48,100	
	대추	758	501	-	1	6,797	10,687	
	밤	11,278	11,637	132	164	4,126	5,656	
	은행	55	260	-	-	6,863	9,758	
	잣	130	145	0	-	64,245	87,113	
호두	29,089	34,413	30,421	34,199	12,656	17,474		

주 1) FTA 체결국 전체 수입량은 국가별로 양허된 HS코드의 수입량을 집계한 값이며, 각 품목별 수입량은 HS코드별 수출이 적용된 값임.
 2) 송아지의 가격 단위는 천 원/마리, 오리고기는 원/3kg, 우유는 원/L, 계란은 원/특란10개, 카네이션은 원/속, 선인장은 원/분임.

□ 농업인등 신청품목 조사·분석 결과(64개)

구분		총수입량(톤)		FTA 체결국 수입량(톤)		가격(원/kg)		충족 여부
		기준	2023년	기준	2023년	기준	2023년	
과일	단감	-	0	-	-	1,947	2,992	-
	배	30	0	-	-	2,433	2,737	-
	복숭아	-	0	-	-	2,871	4,686	-
	블루베리	15,115	20,285	15,115	20,285	18,484	26,250	-
	사과	4	-	-	-	2,614	4,396	-
	아로니아	-	-	-	-	1,523	1,964	-
	자두	0	0	-	-	3,302	5,167	-
과채	단호박	28,014	16,314	21,828	11,444	1,305	2,092	-
	방울토마토	0	-	-	-	3,094	4,450	-
	수박	48	-	-	-	1,465	2,113	-
	애호박	28,014	16,314	21,828	11,444	1,645	2,355	-
	토마토	0	-	-	-	2,111	3,041	-
	풋고추	0	11	-	-	3,407	4,825	-
채소	건고추	53,855	52,068	5	4	16,416	18,740	-
	깻잎	2	16	0	-	4,705	7,515	-
	대파	42,024	42,148	43	21	1,334	1,882	-
	마늘	47,110	42,687	5	2	2,270	3,027	-
	생강	7,962	6,245	405	1,949	4,419	7,441	-
	배추	392	164	0	-	775	982	-
	시금치	2,960	3,884	475	200	2,372	3,326	-
	양배추	18,412	15,437	280	926	597	813	-
	파프리카	0	0	-	-	3,031	3,891	-
특용작물	들깨	18,050	16,966	18,010	16,849	8,553	8,504	-
	양송이버섯	438	594	239	240	6,694	7,838	-
임산물	고사리	1,388	1,237	1,346	1,191	40,874	67,235	-
	구기자	377	486	-	-	42,750	50,000	-
	노타류(진용)	-	-	-	-	88,111	-	-
	더덕	1,958	2,230	-	-	7,064	8,697	-
	도라지	12,333	11,473	12,308	11,468	6,876	7,866	-
	독활	16	20	-	-	13,600	26,667	-
	두릅	0	71	-	-	10,470	14,840	-
	뽕은감	839	1,357	0	-	1,778	2,885	-
	오미자	211	250	-	-	29,500	40,000	-
	작약(한약재)	939	463	-	-	14,835	10,000	-
	표고버섯	16,805	17,137	386	1,770	5,323	6,331	-

구분	총수입량(톤)		FTA 체결국 수입량(톤)		가격(원/kg)		충족 여부	
	기준	2023년	기준	2023년	기준	2023년		
화훼	물망초	0	9	0	-	5,979	6,194	-
	석죽	0	2	0	0	2,957	4,094	-
	수국	3,062	3,795	3,049	3,787	2,156	2,973	-
	스토크	-	-	-	-	3,136	4,530	-
	시레네	0	-	0	-	4,727	6,397	-
	아네모네	9	25	9	25	3,318	9,531	-
	옥시페탈룸	0	10	0	2	4,317	7,436	-
	작약(꽃)	58	27	58	27	4,107	5,402	-
	캐모마일	-	-	-	-	5,351	5,866	-
	프록스	5	8	5	8	3,502	6,205	-
	프리지아	24	10	23	10	1,245	1,942	-
	해바라기	24	46	18	41	2,450	3,218	-
	헬레보루스	68	37	68	35	9,206	6,636	-
	호접난	3	2	0	1	4,210	7,193	-
	홍콩야자	36	46	36	46	1,013	1,352	-
	거베라	319	137	314	135	3,212	4,596	-
	고사리과	12	0	6	0	1,732	1,950	-
	과꽃	2	12	0	-	3,069	4,798	-
	델피니움	60	111	51	106	6,133	9,117	-
	라넨쿨러스	30	276	15	6	5,510	8,575	-
리시안서스	207	334	38	58	6,368	9,961	-	
마가렛	-	-	-	-	8,960	9,174	-	
마리안느	115	106	12	24	2,662	2,299	-	
만냥금	-	-	-	-	4,990	5,937	-	
메리골드	-	-	-	-	2,413	3,431	-	
축산물	녹용	278	280	97	134	254,568	334,027	-
	염소고기	1,533	5,995	1,533	5,995	9,295	21,183	-
곡물	귀리	24,855	24,825	22,976	24,227	1,564	1,793	-
	쌀	466,958	282,058	-	-	2,117	2,361	-

주 1) 각 품목별 수입량은 HS코드별 수출이 적용된 값임.

2) 거베라, 과꽃, 델피니움, 라넨쿨러스, 리시안서스, 마가렛, 메리골드, 물망초, 석죽, 수국, 스토크, 시레네, 아네모네, 옥시페탈룸, 작약(꽃), 캐모마일, 프록스, 프리지아, 해바라기, 헬레보루스, 호접난의 가격 단위는 원/속, 고사리과, 마리안느, 만냥금, 홍콩야자 가격 단위는 원/본, 느티나무(조경용) 가격 단위는 원/그루임.

3) 느티나무(조경용), 만냥금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식물검역통계 확인 결과 묘목으로 확인되어 수입량 통계가 없으며, 느티나무(조경용) 가격의 경우 2023년 공식 통계가 발표되지 않음.

붙임 4**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개요**

- (취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FTA 농어업법 제6조1항)
- (지원대상품목)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 할당물량이 증가한 모든 농산물(시행령 제4조2항1호)
- (지급기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직불금 지급(법 제7조1항)
 - (가격) 협정의 이행으로 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
 - (총수입량) 대상품목의 해당연도 총 수입량이 직전 5년간의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 수입량을 초과
 - (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 초과
 -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 × 수입피해발동계수
- (농가당 지급액) [‘23년도 생산면적 또는 출하마리수]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 (상한액) 농업인 3천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 (지급단가)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가격 간 차액의 95%
 - * 직전 5개년 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간 평균가격 × 0.9
 - (조정계수) = (지급 가능 보조액/지급 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 * 협정이행에 따른 수입증가가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친 정도(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정하는 값, 법 제8조1항)
- (시행기간) 한·중 FTA 발효일(‘15.12.20)부터 10년(법 제6조)